

대구지방법원 2019. 2. 15 선고 2018가단937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단체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3. E

변론 종결2019. 1. 25.

판결 선고2019. 2. 1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2.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1.기재 지분에 따라
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5. 8. 21. 접수 제273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피고 C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3. 피고 D, E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이윤호

별지